1953. 11. 3.
제3종우편물인가

관보

편집 및 발행 총무처
전화 70—4331

제8271호

1.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관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3. 비치용 관보는 5년이상 보관한다.

1979. 6. 13. (수)

BA0 194226

차 례

각 란

고 시

○내무부고시제 3 호(내무부고시제 6 호〈1978. 11. 24〉중일부개정) ····· 3
○법무부고시제422호~제439호(국적상실) ····· 3
○농수산부고시제3, 068호(배합사료원료용수입옥수수의안정기준가격개정)····· 6
○동력자원부고시제34호(전기의사용제한에관한제한기준및방법개정) ····· 6
○건설부고시제196호(분양아파트건설사업계획승인)····· 8
○건설부고시제197호(아파트건설사업계획중추가)····· 9
○건설부고시제198호(현대자동차〈주〉사원종합복지시설부지조성을위한산업기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11
○건설부고시제199호(여천공업기지석유화학단지입주업체원료및제품수급시설사업을위한산업기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13
○체신부고시제227호(기념통신일부인사용기간변경)····· 13
○체신부고시제228호(국제특급우편요금)····· 14
○체신부고시제229호(시외통화방식변경)····· 14
○체신부고시제230호(전신전화취급소설치, 권리자이전및변경) ····· 14
○체신부고시제231호(전화가입구역확장)····· 15
○해운항만청고시제195호(공유수면점용및공작물설치허가)····· 16
○전파관리국고시제558호(무선국허가)····· 16
○전파관리국고시제559호~제569호(무선국변경허가) ····· 16
○전파관리국고시제570호(무선국허가)····· 18

(이면 계속)

2503 A—1—4
1969. 1. 31승인

대한민국정부

190×268 신문용지 54g/㎡

1 445

○전파관리국고시제571호~제574호(무선국변경허가) ……18
○전파관리국고시제575호·제576호(무선국허가) ……19
○전파관리국고시제577호(무선국폐지)……20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14호(도로구역변경) ……20
○제주지방해운항만청고시제25호(해기면허무효) ……20

공 고

○체신부공고제49호(자연보호시리이즈우표〈제 3 집〉발행판매) ……20
○공업진흥청공고제2,742호·제2,743호(KS표시품목지정및표시허가심사기준제정)……21
○해운항만청공고제80호(79년도제 1 회도선사시험합격자) ……2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15호(도로사용게시구간) ……21
○제주지방해운항만청공고제10호(선박신호부자취소) ……21
○제주지방해운항만청공고제11호(선박국적증서무효) ……22
○서울체신청공고제311호(판인사용)……22

지방행정

○서울특별시고시제244호(도시계획시설〈공원〉지적승인)……22
○서울특별시고시제245호(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결정및지적승인)……22
○서울특별시고시제246호(도시계획사업〈도로, 하수도〉실시계획인가)……22
○서울특별시고시제247호(도시계획시설〈학교〉지적승인)……23
○서울특별시고시제248호(도시계획시설〈하수도〉지적승인)……23
○서울특별시고시제250호(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23

사 령

○인사발령 ……24

휘 보 란

○광업출원사항(광업등록사무소) ……24
○존속기간만료로인한광업권소멸등록통지(광업등록사무소) ……24
○압수물환부공고(춘천지방검찰청속초지청) ……25
○공시최고 ……25
○재권관결 ……26
○심 판 ……28

고 시

◉내무부고시제 3 호

내무부고시 제 6 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79년 6 월 8 일

내 무 부 장 관

내무부고시제 6 호중일부개정

내무부고시 제 6 호(1978. 11. 24) 호남, 남해고속도로상 주행속도 지정중 단서를 삭제한다.

시 행 일

이 고시는 1979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422호

아래 사람은 1978년 9 월29일 미합중국에 귀화하여 미합중국의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국적법 제12조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1979년 6 월 9 일

법 무 부 장 관

본 적 경기도 안성군 안성읍 봉남동 323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반포동 ●경남아파트 6 동1001호
성 명 황신자(黃信子)
생년월일 1940년 1 월17일
성 별 여

◉법무부고시제423호

아래 사람들은 1968년11월25일 미합중국에 귀화하여 미합중국의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국적법 제12조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1979년 6 월 9 일

법 무 부 장 관

본 적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5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부이촌동 302-28
성 명 김종성(金鍾星)
생년월일 1935년11월28일
성 별 남

성 명 이영아(李英娥)
생년월일 1937년 3 월 4 일
성 별 여

◉법무부고시제424호

아래 사람은 1978년 4 월12일 미합중국에 귀화하여 미합중국의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국적법 제12조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1979년 6 월 9 일

법 무 부 장 관

본 적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 1 가62-13
주 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신정동 402-8
성 명 이양구(李良求)
생년월일 1942년 7 월16일
성 별 남

◉법무부고시제425호

아래 사람은 1976년 8 월11일 미합중국에 귀화하여 미합중국의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국적법 제12조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1979년 6 월 9 일

법 무 부 장 관

본 적 경기호 수원시 세류동 955
주 소 경기도 화성군 오산읍 원리 339
성 명 김순자(金順慈)
생년월일 1941년 4 월26일
성 별 여

◉법무부고시제426호

아래 사람은 1975년 5 월20일 미합중국에 귀화하여 미합중국의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국적법 제12조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1979년 6 월 9 일

법 무 부 장 관

본 적 서울특별시 종로구 승인동 72-175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2-28
성 명 최대성(崔大成)
생년월일 1956년11월25일
성 별 남

◉법무부고시제427호

아래 사람은 1978년10월 6 일 미합중국에 귀화하여 미합중국의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국적법 제12조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1979년 6 월 9 일

법 무 부 장 관

3 447

본 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497
주 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아2동 791-1020
성 명 주기설(朱基卨)
생년월일 1933년 4월 7일
성 별 남

⊙법무부고시제428호

아래 사람들은 1976년12월16일 미합중국에 귀화하여 미합중국의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국적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1979년 6월 9일

법 무 부 장 관

본 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동 552-12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369-1
성 명 유태성(俞泰成)
생년월일 1942년 4월30일
성 별 남

성 명 배종혜(白鍾惠)
생년월일 1942년 6월13일
성 별 여

⊙법무부고시제429호

아래 사람은 1977년12월19일 미합중국에 귀화하여 미합중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므로 국적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1979년 6월 9일

법 무 부 장 관

본 적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766
주 소 충청남도 대전시 동구 오정동 133
성 명 이옥로(李玉魯)
생년월일 1938년 8월18일
성 별 남

⊙법무부고시제430호

아래 사람은 1974년 9월16일 미합중국에 귀화하여 미합중국의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국적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1979년 6월 9일

법 무 부 장 관

본 적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3가 83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반포동 68-5
성 명 김성중(金性中)
생년월일 1953년 4월 1일
성 별 남

⊙법무부고시제431호

아래 사람들은 미합중국에 귀화하여 미합중국의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국적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1979년 6월 9일

법 무 부 장 관

본 적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83-17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작동 반포아파트 70-406
성 명 채영규(蔡永珪)
생년월일 1939년 4월28일
성 별 남
국적상실일 1974년 8월21일

성 명 이명보(李明保)
생년월일 1943년 4월21일
성 별 여
국적상실일 1974년 9월 4일

⊙법무부고시제432호

아래 사람은 1978년 2월14일 미합중국에 귀화하여 미합중국의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국적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1979년 6월 9일

법 무 부 장 관

본 적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면 하방리 171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86-30
성 명 지흥구(池興九)
생년월일 1938년11월26일
성 별 남

⊙법무부고시제433호

아래 사람은 1978년 4월28일 미합중국에 귀화하여 미합중국의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국적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1979년 6월 9일

법 무 부 장 관

본 적 경상북도 김천시 황금동 76

주 소 922 So. Normandie Ave, L.A.Ca 90006 U.S.A
성 명 김창환(金昌煥)
생년월일 1935년 4 월24일
성 별 남

◉법무부고시제434호

아래 사람들은 1978년 5 월25일 미합중국에 귀화하여 미합중국의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국적법 제12조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1979년 6 월 9 일

법 무 부 장 관

본 적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계동 1
주 소 4929 South 72nd East Avenue, Tulsa Ok 74145 U.S.A
성 명 김기조(金起肇)
생년월일 1921년 1 월30일
성 별 남

성 명 이석영(李錫英)
생년월일 1923년 6 월11일
성 별 여

성 명 김갑수(金甲洙)
생년월일 1959년 6 월11일
성 별 남

◉법무부고시제435호

아래 사람은 1979년 2 월15일 미합중국에 귀화하여 미합중국의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국적법 제12조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1979년 6 월 9 일

법 무 부 장 관

본 적 서울특별시 종로구 익선동 33-20
주 소 1944 Westpoint Pike Lansdale Pa 19446 U.S.A
성 명 서정위(徐廷煒)
생년월일 1928년 2 월 5 일
성 별 남

◉법무부고시제436호

아래 사람은 1979년 2 월 7 일 미합중국에 귀화하여 미합중국의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국적법 제12조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1979년 6 월 9 일

법 무 부 장 관

본 적 전라남도 광주시 서구 북동 40
주 소 41-44 44th St Sunnyside N.Y. 11104 U.S.A
성 명 임승재(任勝宰)
생년월일 1943년 6 월 2 일
성 별 남

◉법무부고시제437호

아래 사람은 미합중국에 귀화하여 미합중국의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국적법 제12조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1979년 6 월 9 일

법 무 부 장 관

본 적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826
주 소 46 Oliver Rd. Parmus. New Jersey U.S.A
성 명 김용태(金容台)
생년월일 1929년 3 월23일
성 별 남
국적상실일 1973년 6 월29일

성 명 이정자(李靜子)
생년월일 1941년 1 월25일
성 별 여
국적상실일 1977년 2 월18일

◉법무부고시제438호

아래 사람들은 1972년11월15일 미합중국에 귀화하여 미합중국의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국적법 제12조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1979년 6 월 9 일

법 무 부 장 관

본 적 전라남도 여수시 충무동 287
주 소 34-11 149 Place Flushing N.Y. 11354
성 명 신금철(辛琴哲)
생년월일 1932년 9 월10일
성 별 여
성 명 김경진(金庚眞)
생년월일 1956년12월31일
성 별 여

⊙법무부고시제439호

아래 사람은 1979년 1월26일 미합중국에 귀화하여 미합중국의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국적법 제12조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1979년 6 월 9 일

법 무 부 장 관

본 적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진리 61

주 소 26 Upper Brook Dr No Brunswick NJ 08902 U.S.A

성 명 임병선(林炳璇)

생년월일 1934년 4 월 5 일

성 별 남

⊙농수산부고시제3,068호

축산법 제44조 제 2 항 및 동법시행령 제 4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합사료 원료용 수입옥수수의 안정기준가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1979년 6 월13일

농수산부장관

품 목	안정 기준 가격
옥 수 수	톤당 70,500원

부대조건

1. 하역비는 포장취급기준으로 하고 PNT 및 산물인수시는 차액(항만하역료율기준)을 환불한다.
2. 하역과정에서 발생하는 본선 제선료 및 조출료는 축산진흥기금으로 처리한다.
3. 모선도착후 현물인수지연으로 인한 보관료 및 체화료는 실수요자가 부담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1979년 6 월 5 일 도착한 수입곡류 물량부터 시행한다.
2. 농수산부고시 제2,992호(1978. 5. 22)는 이를 폐지한다. 다만, 대용유는 1979년 2 차 수입분 675톤이 공급완료된 후부터 폐지한다.

⊙동력자원부고시제34호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25조의 2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의 사용제한에 관한 제한기준 및 방법(동력자원부고시 제28호 1979. 4. 1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1979년 6 월 9 일

동력자원부장관

1. 제한의 기준 및 방법

전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제한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전기시설물	대 상 장 소	제 한 기 준 (최고허용조도)	환산기준 (단위면적4㎡당 전등소요전력) 형광등	백열등	제 한 방 법
1. 일반조명등	가. 사무실(단, 설계, 제도, 계산등 정밀작업을 요하는 장소는 제외)	200룩스(전등으로부터 2m거리의 조도로 함)	30W		○제한기준 초과 사용금지 ○백열등 사용금지
	나. 상점, 백화점의 점포(단, 점포내에서 시계수지등 세공작업을 위한 국부조명을 요하는 장소는 제외)	300룩스(〃)	40W	120W	제한기준 초과 사용금지
	다. 이용실, 미용실	〃	40W	120W	〃
	라. 전각호 이외의 접객업소 및 공공시설	150룩스(〃)	20W	60W	〃
2. 장식용 조명등	상점, 백화점, 접객업소				사용금지
3. 진열장의조명등	상점, 백화점, 기타 견본 전시장	300룩스(진열품 표면의 조도로 함)	40W	120W	제한기준 초과 사용금지

450

6

대상전기시설물	대 상 장 소	제 한 기 준 (최고허용조도)	환산기준 (단위면적4㎡당 전등소요전력) 형광등	백열등	제 한 방 법
4. 공장의 조명등	일반공장(인쇄·섬유·염색등 대상물의 색을 정확히 판별할 필요가 있는 장소, 천정높이가 10m이상인 장소, 내부온도가 0℃이하의 장소, 부식성 또는 폭발성 가스가 발생하는 장소, 정밀작업을 요하는 장소제외)				백열등 사용금지
5. 광고선전용 전등	옥외의 설치장소				사용금지(다만 병원, 약국, 관광호텔의 표지등은 제외하되 약국과 관광호텔은 일몰시 이후부터 24:00이내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가. 광고등					〃
다. 네온싸인	옥내외의 설치장소				사용금지
다. 투광기	〃				사용금지(단,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국제경기는 제외)
6. 경기장 야간조명설비	운동장, 경기장(옥내경기장은 제외)				사용금지
7. 판매용 전기기계기구	상점, 백화점, 기타 견본전시장				○에레베이터는 3층이하 운행금지 및 4층이상 격층제 운행(단, 병원, 관광호텔은 제외)
8. 에레베이터	호텔, 백화점, 기타 설치장소				

2.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사무실이라 함은 옥내에서 사무, 회의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를 말한다.

다. 접객업소라 함은 음식점, 여관, 호텔, 흥행장, 오락장, 미용실, 이용실, 상점, 백화점등 대중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

다. 공공시설이라 함은 역사, 강당, 교회, 각종 회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일반공중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라. 장식용 조명등이라 함은 미장 장식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샹델리아, 명멸등, 백색 또는 주광색 이외의 색등, 수은등, 나트륨등 기타 특수등을 말한다.

마. 샹델리아라 함은 2개이상의 전등단위를 장식적으로 조합하여 1개의 조명등 기구로 한 것을 말한다.

바. 진열장이라 함은 상품 또는 견본등을 전시하기 위한 진열대 또는 진열장을 말한다.

사. 광고등이라 함은 전등을 사용하는 간판 또는 표시등을 말한다.

아. 광고 선전용 투광기라 함은 문화재, 고층건물, 간판, 특수상품 또는 견본등을 광고선전하기 위한 투광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등을 말한다.

자. 판매용전기기계기구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전시 또는 진열하는 전등, 전열기구 기타 전기전자제품을 말한다.

3. 예외조치

전1항의 제한기준과 제한방법에 불구하고 지

방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시행일

이 고시는 197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설부고시제193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대한주택공사의 문산 통일로주변 분양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한다.

1979년 6월 8일

건 설 부 장 관

사업의종류	기업자	사 업 지	건 설 규 모	사 업 비	공 사 기 간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문산통일로변분양아파트건설사업	대한주택공사 사장	경기도파주군문산읍문산1리36-1외 7필지	분양아파트 : 13평형 300호 관리사무소 : 1동 대지면적 : 13,719m²	1,498,994천원	1979. 6~80. 4. 30	별표 1 참조

〈별표 1〉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 : 파주군 문산읍 문산리

지 번	지 목	등급	면 적(평방미터)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71-1	천		26,436	209	소유지 미복구	
10-83	〃		24,288	4,711	〃	
36-1	답	33	661	661		파주군
37-11	〃	42	129	119		파주군
31-1	〃	33	4,086	1,611	파주군 문산읍 문산리 66번지	김종승
36-7	〃	33	3,448	2,738	상 동	상 동
37-5	〃	33	11,051	3,641	파주군 문산읍 선유리 908-1	정운조
36-5	〃	33	787	32	파주군 주내면 봉서리 427번지	권공연
계 8필지				13,722평방미터 (4,150평)		

지 장 물 건 세 목 조 서

소재지 : 파주군 문산읍 문산리

지 번	구 분	면 적	단 위	수량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36-7	배 추	165	평방미터		파주군 문산읍 문산리 66번지	김 종 승
36-7	파	992	〃		〃	〃
36-7	마 늘	331	〃		〃	〃
37-5	배 추	1,322	〃		파주군 문산읍 선유리 908-1	정 운 조
37-5	실 파	331	〃		〃	〃
37-5	못자리	827	〃		〃	〃
10-83	밤나무		주		파주군 문산읍 문산리 83번지	이 한 수

〈별표 2〉

도시계획도로 변경 결정 조서

(문산리)

구 분	등 급	유별	번호	폭원(m)	연장(m)	기점	종점	비 고
기 정	소 로	2	2	8	145	문산리 31-1답	소 2-14시점	아파트단지
변 경	〃	2	2	8	15	〃	〃	내구간폐지
기 정	〃	3	18	6	83	문산리 37-5전	문산리 38-226	
폐 지	〃	3	18	6	83	〃	〃	

별첨 계획도면 표시와 같음(도면생략)

도면은 경기도청, 파주군청 및 대한주택공사에 보관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452

◉건설부고시제197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고시 제183, 186, 187 (1979. 5.26)호로 고시한 대한주택공사의 대전 가장동, 목포 용해동, 청주 사직동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중 다음 사항을 추가 고시한다.

1979년 6월 8일

건 설 부 장 관

도시계획 변경 결정 조서

(목포 용해동)

구 분	등 급	유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기 점	종 점	비 고
기 정	소 로	2	229	8	262	대 1-1(용해 120묘)	중 2-13(용해240-21대)	아파트단지내
변 경	〃	2	229	8	52	소2-228(용해 131-1)	〃	구간폐지
기 정	〃	2	230	8	257	대1-1(용해 114-13전)	중2-13(용해 138-6전)	〃
변 경	〃	2	230	8	54	소2-228 (용해138-19전)	〃	
기 정	〃	3	226	6	156	용해 126-4전	용해 132-1도	
폐 지	〃	3	226	6	156	〃	〃	
기 정	〃	3	238	6	152	용해 126-1답	소2-228(용해139-5임)	
폐 지	〃	3	238	6	152	〃	〃	
기 정	〃	3	227	6	300	소 1-129 (용해 147-14전)	소 2-231 (용해 143-17답)	아파트단지내
폐 지	〃	3	227	6	57	용해 114-19	〃	구간폐지

별첨 계획도면 표시와 같음(도면생략)

도면은 전남도청, 목포시청 및 대한주택공사에 보관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도시계획도로 변경 결정조서

(대전 가장동)

구 분	등 급	유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기 점	종 점	비 고
기 정	소 로	2	1-1	8	206	대 3-14	소 3-40	아파트단지내
폐 지	〃	2	1-1	8	206	〃	〃	구간폐지
기 정	〃	2	1-2	8	66	대 2-7	아파트단지경계	〃
폐 지	〃	2	1-2	8	66	〃	〃	
기 정	〃	3	1-1	6	320	소 3-8	소 3-1-4	〃
폐 지	〃	3	1-1	6	320	〃	〃	
기 정	〃	3	1-2	6	143	소 3-1-1	소 3-40	〃
폐 지	〃	3	1-2	6	143	〃	〃	
기 정	〃	3	1-3	6	155	소 2-1-1	소 3-1-4	
폐 지	〃	3	1-3	6	155	〃	〃	
기 정	〃	3	1-4	6	225	대 2-7	아파트단지경계	아파트단지내
폐 지	〃	3	1-4	6	225	〃	〃	구간폐지
기 정	〃	3	1-5	6	255	대 3-14	중 2-29	
폐 지	〃	3	1-5	6	255	〃	〃	
기 정	〃	3	1-6	6	154	소 3-1-5	아파트단지경계	아파트단지내
폐 지	〃	3	1-6	6	154	〃	〃	구간폐지

453

구 분	등 급	유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기 점	종 점	비 고
기 정	소 로	3	1-7	6	154	소 3-1-5	아파트단지경계	아파트단지내 구간폐지
폐 지	〃	3	1-7	6	154	〃	〃	
기 정	〃	3	1-8	6	66	대 2-7	소 3-15	
폐 지	〃	3	1-8	6	66	〃	〃	
기 정	〃	3	1-9	6	122	중 2-29	•아파트단지경계	아파트단지내 구간폐지
폐 지	〃	3	1-9	6	122	〃	〃	
기 정	〃	3	1-10	6	152	소 3-1-9	•아파트단지경계	〃
폐 지	〃	3	1-10	6	152	〃	〃	
기 정	〃	3	1-11	6	195	대 3-14	소 3-40	〃
폐 지	〃	3	1-11	6	195	〃	〃	
신 설	중 로	2	50	15	80.5	대 2-7	내동 5-4대	
〃	〃	2	51	15	76	대 3-14	내동 4-2대	
〃	소 로	2	30	8	674	내동 5-4대	내동 4-4대	
〃	〃	2	31	8	281	대 3-14	가장 61-5대	
〃	〃	2	32	8	391	가장 66-4	중 2-29	
〃	〃	2	33	8	279	중 2-29	가장 55-4대	
〃	〃	2	34	8	68	가장 60-7대	가장 60-9대	

별첨 계획도면 표시와 같음(도면생략)

도면은 충남도청, 대전시청 및 대한주택공사에 보관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참고 : 1. 공공용지(도로)는 도시계획법 제8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조치

2.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 행위 허가를 갈음 처리

도시계획도로변경결정조서

구 분	등 급	유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기 점	종 점	비 고
기 정	소 로	2	43	8	754	중 3-8(사직 644)	소 3-190(사직 700)	아파트단지내 구간폐지
변 경	〃	2	43	8	330	〃	〃 (사직 693-9)	
〃	〃	2	43-1	8	60	사직 699	소 3-190(사직 700)	
기 정	〃	2	164	8	384	중 3-8(사직 640-1)	소 3-101(사직 693)	〃
변 경	〃	2	164	8	264	〃	사직 693-12	
기 정	〃	2	238	8	370	중 2-1(모중 498-4)	소 3-175(사직 670-1)	〃
변 경	〃	2	238	8	240	〃	소 3-190(사창산70-2)	
기 정	〃	2	280	8	93	중 3-4(사직 670-1)	소 3-175(사직산 133)	
폐 지	〃	2	280	8	93	〃	〃	
기 정	〃	3	105	6	180	소2-164(사직 664-1)	소 3-104(사직 691)	아파트단지내 구간폐지
변 경	〃	3	105	6	76	소 3-105(사직 678)	〃	
기 정	〃	3	174	6	690	대 1-2(사창 369)	소 3-191(사직 621-3)	〃
변 경	〃	3	174	6	320	〃	소 2-233(사창 363)	
기 정	〃	3	175	6	660	소 2-233(사창353)	소 3-192(모중 439-3)	〃
변 경	〃	3	175	6	220	사직 699	〃	
기 정	〃	3	180	6	190	소 2-43(사직 670-4)	소 3-192(사직 631-3)	〃

454

구 분	등 급	유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기 점	종 점	비 고
변 경	소 로	3	180	6	100	소 3-191(사직 633)	소 3-192(사직631-2)	아파트단지 내구간폐지
기 정	〃	3	183	6	610	중 2-1(모충 438-1)	중 3-4(사창 357-9)	〃
변 경	〃	3	183	6	390	〃	소 3-176(사직산 69-1)	
기 정	〃	3	184	6	120	소 2-233(사창 352)	소 3-183(사창 345)	
폐 지	〃	3	184	6	120	〃	〃	
기 정	〃	3	176	6	615	대 1-2(개신 41-2)	소 2-238(사창 343)	아파트단지 내
변 경	〃	3	176	6	499	〃	소 3-187(사창산 70-2)	구간폐지
기 정	〃	3	186	6	330	소 3-177(개신산 1-2)	소 3-184(사창 345-12)	〃
변 경	〃	3	186	6	230	〃	소 3-176(사창산 69-1)	
기 정	〃	3	187	6	892	중 2-1(모충 437-1)	소 3-167(사창 319-2)	〃
변 경	〃	3	187	6	330	〃	소 3-176(사창산 70-2	
변 경	〃	3	187-1	6	360	중 3-4(사직산 132-5)	〃	

별첨 계획도면 표시와 같음(도면 생략)

도면은 충북도청, 청주시청 및 대한주택공사에 보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건설부고시제198호

현대자동차(주) 사원종합 복지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아래와 같이 고시한다.

1979년 6월 8일

건 설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현대자동차(주) 사원종합 복지시설부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나. 성명 : 현대자동차주식회사 대표 정세영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가. 목적 : 종업원 복지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조성
   나. 개요 : 부지조성 25,150평
4. 사업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남 울산시 양정동 271번지 일원
   나. 면적 : 25,150평
5. 사업시행기간 : 승인일 1979년12월30일
6. 공시송달의 방법 : 사업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때에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7. 수용사용할 토지세목 조서 : 별항
8. 관계도서(지적도 및 토지세목조서)는 울산시청 및 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한다(지적도는 게재생략)

토 지 조 서

소재지 : 양정동 지 적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원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254-3	답	408	408	양정동 256-1	김 상 욱
256-4	전	353	353	〃 256-3	박 차 봉
251-4	답	62	62	〃 53	서 광 진
250-3	〃	75	75	〃	〃
249-5	〃	621	621	효문동 43	이 규 홍
254-4	도	32	32	성남동 85-2	울산수리조합
255-2	구	106	106	〃	〃
255-1	답	41	41	효문동 551	박 차 봉
258-1	구	6	6	성남동 85-2	울산수리조합

455

소재지 : 양정동		지 적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원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257-1	답	745	745	효문동 439	이 윤 호
257-2	구	3	3	성남동 85-2	울산 수리 조합
258-2	답	14	14	〃	〃
209-1	〃	362	362	〃	〃
210	전	502	502	양정동 556	김 희 동
210-2	구	32	32	성남동 85-2	울산 수리 조합
209-2	〃	311	311	〃	〃
258-3	〃	657	657	〃	〃
260-1	〃	333	333	〃	〃
260-2	답	471	471	효문동 52	박 호 수
				〃 62	박 송 관
260-3	〃	273	273	〃 52	설 용 구
260-4	〃	187	187	삼산동 1053	박 주 박
260-5	〃	383	383	효문동 549	주 진 조
258-4	〃	130	130	〃 48	정 석 율
259-2	〃	782	782	양정동 484-40	이 수 정
259-1	구	168	168	성남동 85-2	울산 수리 조합
208-1	전	68	68	국	국 세 청
208-2	구	238	238	성남동 85-2	울산 수리 조합
207-1	제 방	12	12	〃	〃
207-2	구	266	266	〃 85-2	〃
274-1	〃	43	43	〃	〃
274-2	답	638	638	효문동 529	권 윤 수
261	전	78	78	〃 551	박 차 봉
262	답	13	13	양정동 253	장 인 환
263-1	〃	1,612	1,612	효문동 510	여 정 용
263-2	〃	600	600	양정동 247	이 규 량
791	도	2,324	301	국	건 설 부
270	답	1,395	1,395	효문동 549	김 천 득
271	〃	783	783	신정동 187-1	박 춘 호
272	〃	469	469	학산동 95	박 복 순
273	〃	451	451	서부동 702-2	박 일 화
275-1	구	846	304	성남동 85-2	울산 수리 조합
275-2	답	514	514	양정동 556	김 외 동
276-2	〃	240	240	효문동 52	박 상 병
				〃	박 대 병
277-2	〃	480	480	〃 43	김 칠 용
278	〃	488	488	방어동 614-2	황 용 덕
269	〃	430	430	염포동 77	박 만 조
267	〃	383	383	효문동 56	김 용 화
268	〃	198	198	〃	김 석 규
279	〃	671	671	양정동 564	천 남 숙

456
12

소재지 : 양정동		지 적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원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281	답	626	626	염포동 34	김 사 만
264	전	407	407	효문동 48	이 하 우
265	〃	489	489	서부동 401	김 원 삼
266	답	126	126	효문동 48	이 하 우
280	〃	114	114	양정동 564	천 남 숙
800	구	126	126	국	건 설 부
282	답	151	151	염포동 34	김 사 만
283-3	전	706	706	효문동 489	박 영 주
283-2	답	249	249	〃 56	김 석 규
284-1	〃	749	516	〃 52	이 준 걸
284-2	〃	364	133	〃	설 용 구
286-3	〃	392	380	효문동 554	박 영 수
287	〃	557	282	양정동 154	백 석 호
290	〃	364	146	효문동 533	박 성 관
289	〃	249	33	서부동 448	안 경 복
288	〃	1,278	1,097	양정동 562	유인섭 외 2
286-2	〃	900	900	북정동 47	정 일 조
285	〃	724	724	효문동 63	백 정 준
286-1	〃	213	213	복산동 583-4	정 일 조
					계 25,150명

◉건설부고시제199호

여천공업기지 석유화학단지 입주업체 원료 및 제품 수급 시설사업을 위한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아래와 같이 고시한다.

1979년 6월 9일

건 설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여천석유화학단지내 입주업체의 원료 및 제품 수급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48
   나. 성명 : 호남에틸렌주식회사 대표 김필상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가. 목적 : 여천석유화학단지 입주업체 원료 및 제품 수급을 위한 부두하역 시설 및 관로시설 공사
   나. 개 요
      1) 시행면적 : 4,320평
         가) 관 로 : 4,018평
         나) 하역시설 : 273평
         다) 관리시설 : 29평
      2) 시설개요
         관로연장 : 1,280m(폭 8.5m)
         관 수 : 28본(4″~12″)
         하역시설 : 19기
         부대시설 : 1식
4. 사업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남 여천군 삼일면 중흥리의 일부지역
   나. 면적 : 4,320평
5. 사업시행기간 : 승인일 1979년12월31일

◉체신부고시제227호

기념통신 일부인 사용에 관한 체신부고시 제205호(1979. 5.16)중 사용기간을 우편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사용한다.

1979년 6월11일

체신부장관

1. 사용기간 변경사항

명 칭	사용기간 당초	사용기간 변경
카터미국대통령방한기념	1979.6.30~7.6	1979.6.29~7.5

⊙체신부고시제228호

국제특급우편요금

국제우편규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특급우편요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79년 6월11일

체신부장관

1. 요 금

지역 / 중량	일 본	홍 콩	지역 / 중량	일본	홍 콩
0.5kg	6,790	6,790	5.5kg	—	13,290
1.0	7,790	7,790	6.0	—	13,790
1.5	8,790	8,790	6.5	—	14,290
2.0	9,790	9,790	7.0	—	14,790
2.5	10,290	10,290	7.5	—	15,290
3.0	10,790	10,790	8.0	—	15,790
3.5	11,290	11,290	8.5	—	16,290
4.0	11,790	11,790	9.0	—	16,790
4.5	—	12,290	9.5	—	17,290
5.0	—	12,790	10.0	—	17,790

(일본은 제한중량이 4kg임)

2. 시행일 : 1979년 7월 1일

⊙체신부고시제229호

전기통신법시행령 제92조 2항에 의거 시외통화방식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79년 6월11일

체 신 부 장 관

1. 변경사항

가. 1차

구 간	변 경 내 용
전주—임실	대시통화구간을 장거리자동전화(자동구간 보조통화포함)구간으로 한다.
전주—순창	〃
남원—순창	〃
전주—남원	수동즉시통화구간을 장거리자동전화(자동구간 보조통화포함)구간으로 한다.

나. 2차

구 간	변 경 내 역
부산—기장	대시통화구간을 장거리자동전화(자동구간 보조통화포함)구간으로 한다.
부산—온산	〃
울산—온산	〃
부산—삼천포	수동즉시 통화구간을 장거리자동전화(자동구간 보조통화포함)구간으로 한다.
진주—삼천포	〃
기장—서울, 대구, 대전 광주, 전주, 수원 인천, 청주, 목포 순천, 여수, 제주 포항, 안동, 경주 구미, 군산, 마산 진주, 울산, 김해 밀양, 삼천포, 진해, 충무, 장승포 김천, 온산	대시통화구간을 수동즉시통화구간으로 한다. (기장발신한)
온산—서울, 대구, 경주 포항, 마산	〃(온산발신한)

2. 시행일

가. 1차변경구간 1979년 6월10일 0시

나. 2차변경구간 1979년 6월17일 0시

⊙체신부고시제230호

전기통신법시행령 제18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신전화취급소 설치, 관리자 이전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79년 6월11일

체 신 부 장 관

1. 설치사항

취 급 소 명	위 치	취급업무	취급시간	시 행 일
대지효정리미락전신전화취급소	경남 창녕군 대지면효정리148	전신(구불, 무배)통화	24시간	79. 6.15
대지효정리귀동전신전화취급소	〃 716	〃	〃	〃
대지용소리세거전신전화취급소	용소리986	〃	〃	〃
경남산외회곡리내동전신전화취급소	경남 밀양군산외면회곡리1454	〃	〃	〃
오목금반향전신전화취급소	충남 아산군 산창면 행목리37	〃	〃	79. 6.11

456 14

취급소명	위치	취급업무	최급시간	시행일
신풍마세전신전화취급소	충남 공주군 신풍면 영정리63	전신(구불, 무배)통화	24	1979. 6.21
청룡호당2동전신전화취급소	경북 영천군 청통면 호당2동 638-4	〃	〃	1979. 6.15
자천정각2동전신전화취급소	〃 화북면 정각2동 428	〃	〃	〃
자천월곡2동전신전화취급소	〃 화북면 월곡2동 155	〃	〃	〃
자천죽곡2동전신전화취급소	〃 화북면 죽곡2동 215	〃	〃	〃
청리삼괴2리전신전화취급소	경북 상주군 청리면삼괴리752	〃	〃	〃
진보신촌1동전신전화취급소	경북 청송군 진보면 신촌동53	〃	〃	1979. 6.20
외서대전리전신전화취급소	경북 상주군 외서면대전리358	〃	〃	1979. 6.15

2. 이전사항

취급소명	현재의 설치장소	이전할 설치장소	비고
금구선암리전신전화취급소	전북 김제군 금구면 선암리252	전북 김제군 금구면 선암리 242	기타사항 변동없음

시행년월일 : 1979년 6월15일

3. 설치장소 및 관리자 변경

취급소명	현재 설치장소	현재 관리자	변경 설치장소	변경 관리자	시행일	비고
가평이화리전신전화취급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이화리 410	이성식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이화리 398	이홍규	79. 6.16	기타사항 변동없음
조종마일리전신전화취급소	경기도 가평군 하면 마일리 356	장학순	경기도 가평군 하면 마일리 389	장원순	〃	〃

1979년 6월11일

체 신 부 장 관

◉체신부고시제231호

전기통신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구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 가입구역확장

국명	시도명	시군명	읍면명	리동명 및 번지	시행일자
이포경기여주군사			궁리	4~11, 35~42, 45~47, 54~60, 84~131, 272~295, 297, 300~309, 315~317	1979.10. 1
			도곡리	54, 55, 59~90, 180~187, 195~208, 293~279	
			외평리	14~62, 153~177, 187~199, 202, 203, 206~212, 228~230, 238~241, 246~248	
			금사리	54~64, 92~111, 119~129, 149~157, 215~229, 243	
남방경기양주주내			남방리	1~10, 37, 41, 42, 45~49, 103, 105~107, 334~339, 375~378	1979. 9. 1
			마전리	62, 63, 70, 71, 78~78, 90~96, 100~105, 110~116, 124~126, 134~136, 144~148, 153~155, 163, 173~186, 205~212, 233~243, 250~253 280~289, 304~308, 331, 340~343, 350~353	
			삼육리	154~159, 196, 197, 205~210, 227~229, 234~247, 251~264, 277~280	
			유양리	1, 2, 70~98, 134~153, 177~216, 226~261, 269~273, 281~284, 388~549	

15 458

국 명	시도명	시군명	읍면명	이 동 명 및 번 지	시 행 일 자
내 산	충 남	부 여	내 산	운치리 일원	1979. 6. 15
				율암리 1-410	〃
세 도	〃	〃	세 도	간대리 내 다근이 부락	〃
				동사리내 우방, 동곡 부락	〃
				청송리내 샛터, 노가골, 청용골 부락	〃
충남옥산	〃	〃	옥 산	수암리 일원	〃
				봉산리 일원	〃
				내대리 일원	〃
				홍연리내 목동 부락	〃
				가덕리내 노독, 세동, 부계촌, 진동 부락	〃

◉해운항만청고시제195호

공유수면 점용 및 공작물 설치를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1979년 6월 9일

해운항만청장

허가년월일	점 용 장 소	수면종류	면 적	목 적	허가기간	허가를 받은 자 주소, 성명
1979. 6. 9	전남 목포시 금화동 18-13번지 지선	해 면	42평	쎄빙탑 1기	허가일로부터 1년	전남 목포시 석현동 815-32 혜성산업(주) 대표 박주홍

◉전파관리국고시제558호

전파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무선국을 허가하고 전파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1979년 5월29일

전파관리국장

1. 허가년월일과 번호 : 1974년 9월14일 선허 제7520001호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김진환
3. 무선국의 종별과 설치장소 : 어객선 1동해호 (연해)
4.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 306동해호 MHMZ C-50
5. 전파의 형식 및 주파수(KHz)와 공중선전력(W)

A3J/H 50/20 2.8A3J/H
A3J 50 2.8A3J
C : 2182(2183.4)
W : 2199.4 2320.4 2639.4 1881.4
A3J/H 30/10 2.8A3J/H
A3J 30 2.8A3J

단 신
TX C : 2182(2183.4)
W : 1881.4 2320.4 2639.4

반복신
TX W : 2313.4 2386.4
RX : 2045.4 2285.4 2010.4 2358.4 2461.4 2508.4 2837.4 KHz

6. 기타 필요한 사항

RADAR 8 KW 4000 PO 9375 MHz
SOSBUOY 6 W 0.1A1 2091 MHz
경보자동전화장치 1대

◉전파관리국고시제559호

전파관리국고시 제658호(1970. 7. 6)로 고시한 삼부해운(주) 소속 유조선 1삼부호 무선국(D7XH)의 변경사항을 허가하고 전파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1979년 5월29일

전파관리국장

(5항) 전파의 형식 및 폭과 주파수 공중선전력란에

A1 75W 0.1A1
C : 8364.4 8367.6
W : 8392 8413 K회수

◉전파관리국고시제560호

전파관리국고시 제375호(1974. 8. 9)로 고시한 서광수산(주) 소속 어선 11삼해호 무선국(6MXS)의 변경사항을 허가하고 전파관리법시행규칙 제22

46016

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1979년 5월29일

전파관리국장

(3항) 무선국의 명칭란에

구 : 11삼해호

신 : 서광호

◉전파관리국고시제561호

전파관리국고시 제485호(1978. 9.23)로 고시한 김기엽 소유 화물선 8장영호 무선국(305장영호)의 변경사항을 허가하고 전파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1979년 5월29일

전파관리국장

(2항) 시설자의 성명란에

구 : 김기엽

신 : 동남해운(주)

◉전파관리국고시제562호

전파관리국고시 제417호(1978. 9.12)로 고시한 (주)동수소속 어선 72동수호 무선국(6LJZ)의 변경사항을 허가하고 전파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1979년 5월31일

전파관리국장

(5항) 전파의 형식 및 폭파 주파수 공중선 전력란에

A3J/H 30/10 2.8A3J/H

C : 2182(2183.4)

A3J 30 2.8A3J

W : 2116.4 2639.4 2757.4 2522.5 2439.4KHz 지정

(2항) 시설자의 성명란에

구 : (주)동수

신 : 우성수산(주)

◉전파관리국고시제563호

전파관리국고시 제860호(1970. 9.16)로 고시한 대호원양실업(주)소속 어선 3대호 무선국(6LWL)의 변경사항을 허가하고 전파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1979년 5월31일

전파관리국장

(2항) 시설자의 성명란에

구 : 대호원양실업(주)

신 : 이수환

◉전파관리국고시제564호

전파관리국고시 제241호(1978. 6.21)로 고시한 남성원양어업(주)소속 어선 27남성호 무선국(6NID)의 변경사항을 허가하고 전파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1979년 5월31일

전파관리국장

(5항) 전파의 형식 및 폭파 주파수 공중선 전력란에

A3J 10W 2.8A3J

C : 27.8224

W : 27.8384 27.8864 27.9024 MHz회수

◉전파관리국고시제565호

전파관리국고시 제73호(1979. 1.18)로 고시한 남성원양어업(주) 소속 어선 28남성호 무선국(308남성호)의 변경사항을 허가하고 전파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1979년 5월31일

전파관리국장

(5항) 전파의 형식 및 폭파주파수 공중선 전력란에

A3J 10W 2.8A3J

C : 27.8224

W : 27.8384 27.8864 27.9024 MHz 회수

◉전파관리국고시제566호

전파관리국고시 제359호(1976. 5.21)로 고시한(주)동수 소속 어선 12동원호 무선국(6NAE)의 변경사항을 허가하고 전파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1979년 5월31일

전파관리국장

(5항) 전파의 형식 및 폭파주파수 공중선 전력란에

A3J/H 30/10W 2.8A3J/H

C : 2182(2183.4)

A3J 30W 2.8A3J

W : 2199.4 2639.4 1881.4 2320.4 KHz 회수

◉전파관리국고시제567호

전파관리국고시 제783호(1975.10.21)로 고시한 김

봉련 소유 화물선 2효임호 무선국(HMCC)의 변경사항을 허가하고 전파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1979년 6월 1일

전파관리국장

(6항) 기타 필요한 사항란에
Auto-alarm 1대 지정

⊙전파관리국고시제568호

전파관리국고시 제929호(1970. 10. 15)로 고시한 (주) 동수소속 어선 18 동원호 무선국(6LWR)의 변경사항을 허가하고 전파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1979년 6월 1일

전파관리국장

(5항) 전파의 형식 및 폭파주파수 공중선 전력란에

A1 150 0.1A1
A2 130 2.1A2 중파 주파수 모두 회수

A1 250 0.1A1 단파 주파수 모두 회수

A1 75 0.1A1
A2 30 2.1A2 중파 주파수 모두 회수

A1 100 0.1A1 단파 주파수 모두 회수

A1 100 0.1A1 W : 2015 1920 2583 3224 3871 KHz 지정

(2항) 시설자의 성명란에

구 : (주)동 수 신 : 양권두

(3항) 무선국 명칭란에

구 : 18동원호 신 : 53대양호

⊙전파관리국고시제569호

전파관리국고시 제140호(1979. 2. 7)로 고시한 대경해운(주) 소유 화물선 9화호 무선국(300화호)의 변경사항을 허가하고 전파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1979년 6월 1일

전파관리국장

(5항) 전파의 형식 및 폭파주파수 공중선 전력란에

(4항) 호출부호란에

구 : HMLZ-50

신 : D7V J-50

⊙전파관리국고시제570호

전파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무선국을 허가하고 전파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1979년 6월 1일

전파관리국장

1. 허가년월일과 번호 : 1979년 6월 1일 선허 제7920625호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송진호
3. 무선국의 종별과 설치장소 : 어선, 2평양호 (1종)
4.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 6KCK 6KCK-50
5. 전파의 형식 및 주파수(KHz)와 공중선전력(W)

A1 100 0.1A1

C : 2091

W : 1920 2015 2050 2583 3224 3871

A3J/H 10/3 2.8A3J/H C : 2182 (2183.4)

A3J 10 2.8A3J

W : 2116.4 2639.4 2757.4 2522.5 2596.4

6. 기타 필요한 사항

RADAR 5 KW 4000 PO 9375 MHz

RADIO DIRECTION FINDER 1

SOSBUOY 8 W 0.1A1 2091 KHz

⊙전파관리국고시제571호

전파관리국고시 제942호(1962. 4. 23)로 고시한 태영상선(주) 소속 화물선 은양호 무선국(HMIZ)의 변경사항을 허가하고 전파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1979년 6월 2일

전파관리국장

(4항) 호출부호란에

구 : HMIZ(HMIZ-20)

신 : D7OC (D7OC-20)

⊙전파관리국고시제572호

전파관리국고시 제1,728호(1966. 9. 1)로 고시한 통영수산전문학교장 소유 실습선 1경양호 무선국(6KSL)의 변경사항을 허가하고 전파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1979년 6월 2일

전파관리국장

(2항) 시설자의 성명란에

구 : 통영수산전문학교장

신 : 통영수산전문대학장

⊙전파관리국고시제573호

전파관리국고시 제494호(1974. 9. 11)로 고시한 한

462 18

동산업(주)소속 어선 7한승호 무선국(305)의 변경사항을 허가하고 전파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1979년 6월 2일

전파관리국장

(2항) 시설자의성명란에
구 : 한동산업(주)
신 : 홍하열
(3항) 무선국의 명칭란에
구 : 7한승호
신 : 28대림호
(4항) 호출명칭란에
구 : 305한승호
신 : 300대림호
(6항) 기타 필요한 사항란에
경보자동전화장치 1대

◎전파관리국고시제574호

전파관리국고시 제240호(1974. 4. 4)로 고시한 대창수산(주) 소속 어선35대창호 무선국(6MUX)의 변경사항을 허가하고 전파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1979년 6월 2일

전파관리국장

(5항) 전파의 형식 및 폭파주파수 공중선 전력란에

A1 150 0.1A1
A2 190 2.1A2) 중파 주파수 모두 회수
A1 250 0.1A1 단파 주파수 모두 회수
A1 75 0.1A1 단파 주파수 모두 회수
A1 75 0.1A1
W : 2015 2583 3224 3871 1920KHz지정
A3J/H 30/10W 2.8A3J/H
C : 2182(2183.4)
A3J 30W 2.8A3J
W : 2116.4 2639.4 2757.4 2522.5 2596.4KHz지정

◎전파관리국고시제575호

전파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무선국을 허가하고 전파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1979년 6월 2일

전파관리국장

1. 허가년월일과 번호 : 1979년 6월 2일 선허제 7920628호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현대중공업(주)강
3. 무선국의 종별과 설치장소 : 화물선, 현대123호(인)
4.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 312현대호, D8PN-50
5. 전파의형식 및 주파수(KHz)와 공중선전력(W)

단신

A3J/H 30/10 2.8A3J/H TX C : 2182(2183.4)
A3J 30 2.8A3J W : 1881.4
2320.4
2639.4

반복신

TX C : 2313.4 2386.4
RX : 2045.4 2285.4 2010.4 2358.4 2461.4
2506.4 2837.4

단신

F3 20/1 16F3
156.80 156.30 156.40 156.50 156.55 156.60
156.65 156.70

복신

156.90 157.00 157.10 157.15 157.20 157.25
157.30 157.35

6. 기타 필요한 사항
RADAR 10 KW 4000 PO 9410 MHz
SOSBUOY 5W 2.1A2 2182MHz
경보자동전화장치 1대

◎전파관리국고시제576호

전파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무선국을 허가하고 전파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1979년 6월 2일

전파관리국장

1. 허가년월일과 번호 : 1979년 6월 2일 선허제 7920629호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정남수
3. 무선국의 종별과 설치장소 : 유조선, 2승리호 (연)
4.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 301승리호
5. 전파의 형식 및 주파수(KHz)와 공중선전력(W)

단신

A3J/H 30/10 2.8A3J/H
TX C : 2182(2183.4)
A3J 30 2.8A3J
W : 1881.4 2320.4 2639.4

반복신

TX W : 2313.4 2386.4
RX : 2045.4 2285.4 2010.4 2358.4 2461.4
2508.4 2837.4

6. 기타 필요한 사항
경보자동전화장치 1대

◉전파관리국고시제577호

전파관리국고시 제1025호(70.11. 2)로 고시한 (주)한국수산개발공사장 소속 어선 202 남해호 무선국(6KDP)을 폐지하고 전파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1979년 6월 2일

전파관리국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14호

도로구역변경에관한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 이에 고시한다.

1979년 5월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구역 \ 구분	노선명	구간	총연장(km)	중요경과지	구역변경이유
현구역	국도3호선	자 : 경기도 이천군 장호원읍(도계) 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동	71,647	여주군 가남면 태평리—실촌면, 곤지암리—광주면 동부면	아이, 비, 알, 디 3차 차관도로포장공사로 인한 도로선형 개량 및 포장
		계	71,647		
변경구역	국도3호선 삼천포—초산	자 : 경기도 이천군 장호원읍(도계) 지 : 경기도 성남시 성남동	64	여주군 가남면 태평리—실촌면 곤지암리—성남시 갈현동	〃
		계	64		

관계도면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국도과 : 22-81170)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공람한다.

◉제주지방해운항만청고시제25호

다음 사람의 해기 면허가 무효임을 고시한다.

1979년 6월 5일

제주지방해운항만청장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면허종류	본적
이대석	1940. 8.15	8-11	을2항사	제주시 건입동 1249
오봉영	1937. 4.11	2145	소기사	남군 대정읍 상모리 3958
강한주	1949.11.17	8-103	병기사	제주시 도두리 2562

공고

◉체신부공고제49호

우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보호시리이즈 우표(제3집)를 다음과 같이 발행 판매함을 공고한다.

1979년 6월11일

체신부장관

명 칭 : 자연보호시리이즈 우표(제3집)
발행일 : 1979년 6월20일

우표번호	1139	1140
액 면	20원	20원
도 안	산양	은방울꽃
발행수량	6,000,000매	6,000,000매

쇄 색 : 4도
판 식 : 그라비야
인 면 : 가로 23미리미터, 세로33미리미터
천 공 : 13
용 지 : 백색무투문지
시이트구성 : 25매(5×5)
원화작자 : 안성경
인쇄처 : 한국조폐공사
판매처 : 전국 각 우체국(철도우체국 제외)

46420

◉공업진흥청공고제2,742호

한국공업규격표시품목지정및표시허가심사기준

공업표준화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표시지정품목과 표시허가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9년 6월 8일

공업진흥청장

공고내용 : 표시지정품목

규격번호 : KS G 8004

규 격 명 : 하아모니카

표시허가심사기준 내용 : 생략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업진흥청공고제2,743호

한국공업규격표시품목지정및표시허가심사기준

공업표준화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표시지정품목과 표시허가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9년 6월 9일

공업진흥청장

공고내용 : 표시지정품목

규격번호 : KS G 3305

규 격 명 : 가정용법랑기물

표시허가심사기준 내용 : 생략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해운항만청공고제80호

도선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1979년도 제1회 도선사시험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9년 6월 8일

해운항만청장

1979년도제 1 회도선사시험합격자발표

1. 합격자명단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부산항		인천항	
1	박 영 주	4	최 병 돌
2	강 두 욱	5	이 행 근
3	주 영 필	6	안 태 진
		7	김 기 섭
		8	선 승 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15호

도로의사용과개시에관한공고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9년 5월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 일반국도(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도)
2. 노 선 명 : 국도 3호선(삼천포—초산)
3. 사용개시구간 : 경기도이천군장호원읍(도계)—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의동(연장 79.5km)
4. 주요경과지 : 장호원읍(도계)—여주군가남면태평리—이천군 이천읍—이천군 실촌면 근지암리—광주군 광주면—성남시 갈현동—서울특별시 강남구 가락동—잠실교—구의동
5. 사용폐지구간 : 없 음
6. 전용구간 : 없 음
7. 증용구간 : 없 음
8. 비 고 : 관계도면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국도과 : 22-8117)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공람한다.

◉제주지방해운항만청공고제10호

다음 선박은 선박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선박신호부자가 취소되었기 공고한다.

1979년 6월 7일

제주지방해운항만청장

선박번호	선 명	총톤수	신호부자	취소일자	소유자 주소·성명
JM8135	1동양호	495.77	D.8.B.P.	1979. 6. 5	제주시 건입동 1302 양 두 인

◉제주지방해운항만청공고제11호

다음 선박은 선박법시행령 제56조에 의거 선박국적증서가 무효되었기 공고한다.

1979년 6월 5일

제주지방해운항만청장

선박번호	선 명	총톤수	말소등록일자	소유자 주소·성명
JM8135	1동양호	495.77	1979. 6. 5	제주시 건입동 1302 양 21 두 인

465

◉서울체신청공고제311호

당청 관하 잠실우체국 종합전시장 분국에서 사용할 관인을 관인규정 제9조에 의거 1979년 6월 1일부터 사용함을 공고한다.

1979년 6월 7일

서울체신청장

잠실우체국종합전시장분국장인



지방행정

◉서울특별시고시제244호

도시계획시설(공원)지적승인

1. 건설부고시 제138호('77. 7. 9) 및 건설부고시 제104호('79. 4. 4)로 재정비된 도시계획시설(공원)중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와 건설부고시 제41호('77. 3.16)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년 6월 7일

서울특별시장

○ 도시계획시설(공원)지적승인조서

번 호	공원종류	공원명	위치	면적(㎡)
근 10-20	근린공원	여의도자매공원	여의도동	16,500
근 09-04	〃	한남공원	용산구 한남동	28,197
근 07-04	〃	녹번제1공원	녹번동	25,500
근 07-05	〃	녹번제2공원	〃	34,500
근 07-07	〃	역촌공원	갈현동	52,500
근 07-08	〃	구산공원	구산동	32,300
18	자연공원	구름산공원	시흥군 서면 하안리	674,466
표 03-01	묘지공원	망우묘지공원	망우동	832,890
9	자연공원	용마공원	동대문구 면목동	5,146,400
			성동구 중곡동	중 3,696,400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 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245호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결정및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도시계획 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와 건설부고시 제41호(1977. 3.16)의 권한위임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고시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과와 광명출장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년 6월 8일

서울특별시장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신설	여객자동차정류장	시흥군 광명리 342 일대	15,960㎡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246호

도시계획사업(도로·하수도)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221호(1978. 5.15)로 시설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362호(1978. 7.24)로 지적승인되어 서울특별시공고 제146호(79. 5. 8)로 도시계획사업(도로·하수도) 실시계획에 따른 서류 공람 및 의견 청취된 도시계획사업(도로·하수도)를 인가함에 따라 도시계

획법 제26조와 건설부고시 제41호(1977. 3.16)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천호출장소 도시정비과와 보목과 및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년 6월 8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 : 강남구 성내동 319-40
성내동 355-8번지간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도로·하수도)공사
(통합청사진입로 개설)

3. 사업규모 : 가. 도로개설 폭=20미터
연장=385미터
(1) 아스팔트 면적=53.8
(2) 하수도 암거 연장=135미터
흄관 연장=535미터
(3) 보도 부럭 면적=13.8

4.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 천호출장소장

5. 사업의착준공예정일 : 1979년 5월~1979년 9월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생략)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첨(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247호

도시계획시설(학교)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222호(1979. 5.24)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41호(1977. 3.16)의 권한위임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1과와 천호출장소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년 6월 8일

서울특별시장

가. 학교 지적승인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
신설	예림여자고등기술학교	강남구 분정동 산 7의 10	3,448 (1,043평)
〃	안흥공업전자학교	강남구 상일동 264번지 3필지	7933.5 (2,400평)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248호

도시계획시설(하수도)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168호(1979. 4.24)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하수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41호(1977. 3.16)의 권한위임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2과와 천호출장소 시민봉사실 및 토목과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년 6월 8일

서울특별시장

가. 하수도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폭원	연장 (m)	기점	종점
신설	하수도	6	35	풍납동 155-26	풍납동 155-28
신설	하수도	6	385	풍납동 156-8	풍납동 237-8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250호

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하수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건설부고시 제41호(1977. 3.16)의 권한위임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2과와 관할 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 보인다.

1979년 6월 9일

서울특별시장

○결정조서

구 분	시 설 명	폭 원	연 장	기 점	종 점
신 설	하수도	12~20m	75m	홍지동 72-2	홍지동 74-6
신 설	〃	3.5m	200m	누상동 166-127	옥인동 177-13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사 령

○인 사 발 령

◉1979년 6월11일자

(주 카나다대사관 특명전권대사)

대 사 한 병 기(韓 丙 起)

주 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 겸임을 명함

(농수산부 농업경제국 농업금융과장)

서 기 관 이 동 배(李 東 培)

외무부이사관에 임함

주 이탈리아공화국대사관 근무를 명함

(농수산부 기획관리실 농업기획관)

부 이 사 관 조 규 일(曺 圭 一)

외무부이사관에 임함

주 미합중국대사관 근무를 명함

(주 미합중국대사관)

외무이사관 서 중 일(徐 仲 一)

이사관에 임함

농수산부 농수산통계관에 보함

(주 이탈리아공화국대사관)

외무이사관 이 병 석(李 炳 淅)

이사관에 임함

농수산부 기획관리실 농업기획관에 보함

(농수산부 농업개발국장)

부 이 사 관 허 석 구(許 錫 九)

이사관에 임함

(현부서와 같음)

(서울대학교 총장)

고 병 익(高 柄 翊)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위원을 명함

(1979. 6. 9~1980. 6. 8)

윤 천 주(尹 天 柱)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위원을 면함

(국립공업시험원 기계금속부 열기계과)

공업연구관 (3 을) 유 영 기(俞 永 基)

기계기좌에 임함

공업진흥청 품질관리국 기전관리과 근무를 명함

(서울소년감별소)

의무기좌 시보 주 근(朱 根)

의무기좌에 임함(1979. 6. 2자)

(현부서와 같음)

◉1979년 6월 9일자

장 성 환(張 盛 煥)

대한무역진흥공사 사장에 임함

(1979. 6. 9~1982. 6. 8)

(대 통 령)

휘 보

○광 업 출 원

광업지적	등록번호	광종명	입회장소	입 회 월 일	주 소	성 명
대구 21	30835	운 모	경북도청 공업과	1979. 6.26 오전10시정각	경북 대구시 대명동 2145	최재봉

위 광업권 설정 등록지역에 이종광물이 출원되었기 상호광상에 조사코자 하오니 상기 일시 및 장소에 입회하고 출장직원에 안내하고 설명할 것.

1979년 6월 9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존속기간만료로인한광업권소멸등록통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89의 708

대표자 김 도 섭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소재(단양 지적66호) 등록제24819호 석회석 광업권은 존속기간이 1954년 6월 8일부터 1979년 6월 7일까지로 되어 있는바

광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1978. 12. 9~1979. 3. 6)에 존속기간 연기신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광업등록령 제17조의 규정을 적용 1979년 6월 8일자로 직권으로 소멸등록을 필하였기 광업등록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1979년 6월1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공 고

1. 아래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1979년 6월 8일

춘천지방검찰청속초지청장

압 수 물 건

번호	물건명	수량
2	일삼호자전차(중고)	1대
33	일제전자계산기	1개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	죄명	환부인
78 1052	78 161	안재덕	상습절도	성명불상
1729	261	김성도 외5	특수절도	〃

○공시최고

79. 카. 888

신청인 권 용 안(權 龍 安)

인천시 남구 간석동 24의 3

다음 기재증서의 소지인은 1979년10월11일 10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79년 6월 8일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판 사 오 유 덕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류·번호·금액·발행년월일·발행인및지급인

종류	번호	금액	발행년월일	발행인및지급인
자기앞수표	라14180632	금100,000원정	1979. 5.26	국민은행인천간석출장소
〃	라14180633	금100,000원정	〃	〃
〃	라14180634	금100,000원정	〃	〃

79. 느. 32

청구인 최 승 호(崔 乘 虎)

주 소 강원도 묵호읍 초구리 148 2반

사건본인(부재자) 최 백 헌(崔 百 憲)

1935년 8월15일생

본 적 강원도 묵호읍 초구리 148

최후주소 강원도 묵호읍 초구리 148

위 실종선고 청구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다음과 같이 최고한다.

1. 부재자는 공시최고 기일까지 그 생존의 신고를 할 것이며 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종의 선고를 받는다.
1. 부재자의 생사를 아는 자가 있으면 공시최고 기일까지 그 신고를 할 것.
1. 공시 최고기일 1979년12월15일 10시

1979년 6월 8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심판관 박 규 석

79. 카. 576

신청인 이 상 동

경남 마산시 오동동 233의13

다음 기재증서의 소지인은 1979년10월15일 10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79년 6월 4일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사 오 성 률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약속어음

1. 번 호 나319036
1. 금 액 금1,000,000원정
1. 발행일자 미기입
1. 발 행 인 신청인
1. 지급기일 1979년 6 월20일
1. 발행지및지급지 마산시
1. 지급장소 경남은행부림동지점
1. 수 취 인 미기입
1. 최후소지인 신청인

1. 종 류 약속어음
1. 번 호 나319037
1. 금 액 금1,000,000원정
1. 발행일자 미기입
1. 발 행 인 신청인
1. 지급기일 1979년 6 월30일
1. 발행지및지급지 마산시
1. 지급장소 경남은행부림동지점
1. 수 취 인 미기입
1. 최후소지인 신청인

1. 종 류 약속어음
1. 번 호 나319849
1. 금 액 금2,000,000원정
1. 발행일자 미기입
1. 발 행 인 신청인
1. 지급기일 1979년 7 월10일
1. 발행지및지급지 마산시
1. 지급장소 경남은행 부림동지점
1. 수 취 인 미기입
1. 최후소지인 신청인

○제권판결

79. 카. 55

신청인 박 효 서(朴 孝 緖)

강원도 영월읍 영흥10리 812

다음 기재증권에 대하여 공시최고를 하였는 바 공시최고 기일 1979년 6 월 8 일 10시까지 권리신고 및 증권의 제출인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제권판결 신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 문

다음 기재증권의 무효를 선고한다.

1979년 6 월 8 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사 이 상 경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류·번호·수량·발행인·출고처·발행일·최후소지인

종 류	번 호	수 량	발 행 인	출 고 처	발 행 일	최후소지인
시멘트출고증	80849	시멘트200대	서한실업주식회사	한일시멘트단양공장	1978. 7. 18	신 청 인
〃	80850	〃	〃	〃	〃	〃

79. 카. 99

신청인 유 병 돈

단양군 대강면 천동리 216

다음 기재증서의 소지인은 1979년 9 월19일 10시까지 당원의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79년 6 월 4 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사 이 상 경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출고의뢰서
1. 번 호 026995
1. 지시번호 S3-5-20
1. 특약점번호 69
1. 수 량 시멘트 200대(40키로그람입)
1. 발행년월일 1978년 5 월 1 일
1. 발 행 인 이창호
1. 지 급 인 성신화학 단양공장
1. 수 취 인 지참인
1. 최후소지인 신청인

79. 카. 133

신청인 한 원 교

홍성군 홍북면 풍산리 168

다음 기재의 증권에 대하여 1979년 5 월31일 10시까지 권리의 제출신고나 청구및 증권을 제출한 자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한 등 증권의 무효를 선언한다.

1979년 5 월31일

47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사 김 억 규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보통송금수표
1. 번 호 가 02072859가
1. 금 액 금 200,000원정
1. 발행년월일 1979년 1월 5일
1. 발행인및지급인 서울농업협동조합불광지소
1. 발 행 지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불광동281의106
1. 수 취 인 지참인
1. 지 급 취 소 홍성군농업협동조합

---

79. 카. 816

신청인 구 자 일(具 慈 一)

대구시 남구 대봉동 590의 217

다음 기재의 증권에 대하여 1979년 6월 4일 10시까지 권리의 계출신고나 청구 및 증권을 제출한자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한 동증권의 무효를 선언한다.

1979년 6월 4일

대구지방법원

판 사 김 길 중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약 속 어 음
1. 번 호 No. 979788
1. 액 면 금500,000원정
1. 발 행 일 1978년12월19일
1. 지 급 일 1978년12월31일
1. 지 급 지 대구시
1. 지 급 장 소 주식회사 대구은행대구서지점
1. 발 행 지 대구시
1. 발 행 인 세화진흥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수경

---

79. 카. 817

신청인 박 일 락

대구시 서구 비산동 5구 1047번지

다음 기재증서에 대하여 1979년 6월 4일 10시까지 권리의 신고나 청구 및 증서를 제출한 자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동 증서의 무효를 선고한다.

1979년 6월 4일

대구지방법원

판 사 백 수 일

증서의중요한취지

1. 증권의종류 자기앞수표
1. 증권의번호 F 8666164
1. 액 면 금240,000원정
1. 발 행 일 1979년 2월14일
1. 발 행 인 중소기업은행대구대신동지점
1. 지 급 인 상 동
1. 최후소지인 박일락
대구시서구비산동 5구 1047번지

---

79. 카. 98

신청인 하 영 석

진주시 계동 37

다음 기재 당좌수표에 대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최고를 하였는 바 공시최고 기일인 1979년 6월 8일 10시까지 권리신고 및 수표의 제출인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제권판결 신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 문

다음 기재수표의 무효를 선고한다.

1979년 6월 8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사 이 근 웅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당좌수표
1. 번 호 430684
1. 금 액 금4,000,000원정
1. 발 행 일 1979년 2월 1일
1. 발 행 인 하영석
1. 발 행 지 진주시
1. 지 급 장 소 중소기업은행진주지점
1. 최후소지인 하영석

---

79. 카. 116

신청인 여 승 호

경남 마산시 중앙동 2가 1의 420

다음 증서에 대하여 1979년 6월 4일 10까지 권리의 신고나 청구 및 증서를 제출한자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 문

다음 증서의 무효를 선고한다.

1979년 6월 4일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사 오 성 률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자기앞수표
1. 번 호 가10295997가
1. 금 액 금1,800,000원정
1. 발행일자 1978년12월30일
1. 발행지 및 지급지 마산시
1. 발행인 및 지급인 창원군농업협동조합
1. 수 취 인 지참인불
1. 최후소지인 신청인

---

79. 카. 151

신청인 박 만 길

경남 마산시 성호동 12의 8(3통4반, 서윤상방)

다음 증서에 대하여 1979년 6월 4일 10시까지 권리의 신고나 청구 및 증서를 제출한 자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 문

다음 증서의 무효를 선고한다.

1979년 6월 4일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사 오 성 률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자기앞수표
1. 번 호 745858
1. 금 액 금400,000원정
1. 발 행 인 경남은행부림동지점
1. 발 행 일 1978년 8월16일
1. 최후소지인 신청인

○심 판

78. 느. 50

청구인 정 종 대(鄭鍾大)

주 소 강원도 춘성군 남면 추곡리 68번지

사건본인(부재자) 정 종 자(鄭鍾玆)

1932년 5월25일생

본적 및 최후주소 강원도 춘성군 남면 추곡리 68번지

주 문

부재자 정종자(鄭鍾玆)의 실종을 선고한다.

이 유

위 부재자에 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실종선고의 청구가 있으므로 당원은 1978년11월 8일 부재자의 생존신고에 대한 공시최고를 하였으나 공시최고기일인 1979년 5월30일까지 그 신고가 없으므로 부재자는 1950년 6월25일 이후 5년이상 생사불명인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1979년 6월 5일

춘천지방법원 가사심판부

심판관 박 정 근

---

78. 느. 945

청구인 김 주 수(金周守)

주 소 울산시 염포동 344번지

부 재 자 김 호 열(金浩烈)

1925년 4월16일생

본적 및 최후주소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상월천리210번지

위 부재자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부재자가 1950년 6월25일 당시 행방불명되었으므로 실종선고를 바란다는 청구가 있어 당원은 1978년11월 24일 부재자의 생사신고를 할것을 공고하였으나 그 기일인 1979년 6월 4일까지 그 신고가 없으므로 부재자는 1950년 6월25일부터 5년이상 생사불명인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주 문

부재자 김호열의 실종을 선고한다.

1979년 6월 7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심판관 장 석 화

---

78. 느. 946

청구인 이 규 석(李圭錫)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145번지

부 재 자 이 중 섭(李重燮)

1916년10월15일생

본적 및 최후주소 강원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145번지

위 부재자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부재자가 1953년 2월27일 당시 행방불명되었으므로 실종선고를 바란다는 청구가 있어 당원은 1978년11월 24일 부재자의 생사신고를 할것을 공고하였으나 그 기일인 1979년 6월 4일까지 그 신고가 없으므로 부재자는 1953년 2월27일부터 5년이상 생사불명인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472

28

주 문

부재자 이중섭의 실종을 선고한다.

1979년 6월 7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심판관 장 석 화

---

78. 느. 947

청구인 이 청 우(李晴雨)

주소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장산리 72번지의 1

부 재 자 이 학 우(李鶴雨)

1931년 2월14일생

본적 및 최후주소 강원도양양군강현면장산리72번지의 1

위 부재자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부재자가 1950년 8월 6일 당시 행방불명되었으므로 실종선고를 바란다는 청구가 있어 당원은 1978년11월 24일 부재자의 생사신고를 할것을 공고하였으나 그 기일인 1979년 6월 4일까지 그 신고가 없으므로 부재자는 1950년 8월 6일부터 5년이상 생사불명인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주 문

부재자 이학우의 실종을 선고한다.

1979년 6월 7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심판관 장 석 화

---

78. 느. 948 · 949

청구인 천 기 수(千基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30번지

부 재 자 천 만 석(千萬石)

1946년 9월17일생

〃 천 만 길(千萬吉)

1950년12월30일생

본적 및 최후주소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30번지

위 부재자들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부재자들이 1953년 7월27일 당시 행방불명되었으므로 실종선고를 바란다는 청구가 있어 당원은 1978년 11월24일 부재자들의 생사신고를 할것을 공고하였으나 그 기일인 1979년 6월 4일까지 그 신고가 없으므로 부재자들은 1953년 7월27일부터 5년이상 생사불명인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주 문.

부재자 천만석, 천만길의 실종을 선고한다.

1979년 6월 7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심판관 장 석 화

---

78. 노. 953~955

청구인 김 남 범(金南範)

주 소 춘천시 효자2동 167번지의10

부 재 자 김 용 기(金鏞起)

1915년 9월12일생

〃 정 부 영(鄭富永)

1919년 1월20일생

〃 김 남 명(金南明)

1941년 6월13일생

본적 및 최후주소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용호리 239번지

위 부재자들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부재자들이 1951년 1월20일 당시 행방불명되었으므로 실종선고를 바란다는 청구가 있어 당원은 1978년 11월24일 부재자들의 생사신고를 할것을 공고하였으나 그 기일인 1979년 6월 4일까지 그 신고가 없으므로 부재자들은 1951년 1월20일부터 5년이상 생사불명인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주 문

부재자 김용기, 정부영, 김남명의 실종을 선고한다.

1979년 6월 7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심판관 장 석 화

---

78. 느. 956~957

청구인 이 용 익(李鎔翼)

주 소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119번지

부 재 자 이 연 주(李淵周)

1924년 8월 6일생

〃 이 용 주(李用周)

1927년 9월10일생

본적 및 최후주소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119번지

위 부재자들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부재자들이 1950년 7월30일 당시 행방불명되었으므로 실종선고를 바란다는 청구가 있어 당원은 1978년 11월24일 부재자들의 생사신고를 할것을 공고하였으나 그 기일인 1979년 6월 4일까지 그 신고가 없으므로 부재자들은 1950년 7월30일부터 5

29 473

된 이상 생사불명인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주 문

부재자 이연주, 이용주의 실종을 선고한다.

1979년 6 월 7 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심판관 장 석 화

---

78. 느. 958

청구인 황 성 녀(黃 姓 女)
주 소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 438번지
부 재 자 이 홍 우(李 鴻 雨)
1931년 2 월22일생

본적 및 최후주소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 91번지

위 부재자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부재자가 1950년 8 월 6 일 당시 행방불명되었으므로 실종선고를 바란다는 청구가 있어 당원은 1978년11월 24일 부재자의 생사신고를 할것을 공고하였으나 그 기일인 1979년 6 월 4 일까지 그 신고가 없으므로 부재자는 1950년 8 월 6 일부터 5 년 이상 생사불명인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주 문

부재자 이홍우의 실종을 선고한다.

1979년 6 월 7 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심판관 장 석 화

---

78. 느. 959

청구인 권 혁 동(權 赫 東)
주 소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사교리 30번지
부 재 자 권 오 철(權 五 喆)
1924년 5 월13일생

본적 및 최후주소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사교리 30번지

위 부재자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부재자가 1951년 1 월10일 당시 행방불명되었으므로 실종선고를 바란다는 청구가 있어 당원은 1978년11월 24일 부재자의 생사신고를 할것을 공고하였으나 그 기일인 1979년 6 월 4 일까지 그 신고가 없으므로 부재자는 1950년 1 월10일부터 5 년 이상 생사불명인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주 문

부재자 권오철의 실종을 선고한다.

1979년 6 월 7 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심판관 장 석 화

---

78. 느. 960

청구인 손 건 호(孫 健 浩)
주 소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 479번지
부 재 자 손 정 호(孫 正 浩)
1932년 1 월 3 일생

본적 및 최후주소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 479번지

위 부재자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부재자가 1950년 7 월25일 당시 행방불명되었으므로 실종선고를 바란다는 청구가 있어 당원은 1978년11월 24일 부재자의 생사신고를 할것을 공고하였으나 그 기일인 1979년 6 월 4 일까지 그 신고가 없으므로 부재자는 1950년 7 월25일부터 5 년 이상 생사불명인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주 문

부재자 손정호의 실종을 선고한다.

1979년 6 월 7 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심판관 장 석 화

---

78. 느. 961

청구인 김 정 길(金 政 吉)
주 소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 53번지
부 재 자 김 춘 광(金 春 光)
1913년 8 월16일생

본적 및 최후주소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 53번지

위 부재자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부재자가 1951년 2 월10일 당시 행방불명되었으므로 실종선고를 바란다는 청구가 있어 당원은 1978년11월 24일 부재자의 생사신고를 할것을 공고하였으나 그 기일인 1979년 6 월 4 일까지 그 신고가 없으므로 부재자는 1951년 2 월10일부터 5 년이상 생사불명인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주 문

부재자 김춘광의 실종을 선고한다.

1979년 6 월 7 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심판관 장 석 화

---

78. 느. 962

청구인 서 영 성(徐 永 星)
주 소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386번지
부 재 자 서 영 진(徐 永 珍)
1932년 9 월 5 일생

본적 및 최후주소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386번지

위 부재자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부재자가 1950년10월 5 일 당시 행방불명되었으므로 실종선고를 바란다는 청구가 있어 당원은 1978년11월 24일 부재자의 생사신고를 할것을 공고하였으나 그 기일인 1979년 6 월 4 일 까지 그 신고가 없으므로 부재자는 1950년10월 5 일부터 5 년이상 생사불명인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같이 심판한다.

주 문

부재자 서영진의 실종을 선고한다.

1979년 6 월 7 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심판관 장 석 화

78. 느. 963

청구인 오 세 권(吳 世 權)
주 소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158번지
부 재 자 오 태 현(吳 台 鉉)
1930년10월 9 일생

본 적 및 최후주소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158번지

위 부재자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부재자가 1951년10월 5 일 당시 행방불명되었으므로 실종선고를 바란다는 청구가 있어 당원은 1978년11월 24일 부재자의 생사신고를 할 것을 공고하였으나 그 기일인 1979년 6 월 4 일까지 그 신고가 없으므로 부재자는 1951년10월 5 일부터 5년이상 생사불명인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주 문

부재자 오태현의 실종을 선고한다.

1979년 6 월 7 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심판관 장 석 화

---

78. 느. 964~967

청구인 이 병 혼(李 炳 昕)
주 소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인정리 417번지
부 재 자 이 중 욱(李 曾 郁)
1913년11월20일생
〃 윤 갑 인(尹 甲 寅)
1914년10월28일생
〃 이 병 임(李 炳 臨)
1940년 1 월 5 일생
〃 이 순 옥(李 順 玉)
1943년 2 월24일생

본 적 및 최후주소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인정리417번지

위 부재자들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부재자들이 1953년 7 월27일 당서 행방불명되었으므로 실종선고를 바란다는 청구가 있어 당원은 1978년 11월24일 부재자들의 생사신고를 할 것을 공고하였으나 그 기일인 1979년 6 월 4 일까지 그 신고가 없으므로 부재자들은 1953년 7 월27일부터 5 년이상 생사불명인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주 문

부재자 이중욱, 윤갑인, 이병임, 이순옥의 실종을 선고한다.

1979년 6 월 7 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심판관 장 석 화

---

78. 느. 950~952

청구인 김 철 수(金 喆 洙)
주 소 속초시 교동 482번지의 142
부 재 자 김 창 수(金 昌 洙)
1930년 2 월11일생
부 재 자 김 준 수(金 俊 洙)
1923년 2 월21일생
〃 김 덕 수(金 德 洙)
1932년 8 월16일생

본 적 및 최후주소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하복리490번지

위 부재자들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부재자들이 1951년 1 월20일 당시 행방불명되었으므로 실종선고를 바란다는 청구가 있어 당원은 1978년 11월 24일 부재자들의 생사신고를 할 것을 공고하였으나 그 기일인 1979년 6 월 4 일까지 그 신고가 없으므로 부재자들은 1951년 1 월20일부터 5년이상 생사불명인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주 문

부재자 김창수, 김준수, 김덕수의 실종을 선고한다.

1979년 6 월 7 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심판관 장 석 화

---

78. 느. 968~971

청구인 이 재 붕(李 在 鵬)
주 소 강원도 양양군 양양면 남문리175번지
부 재 자 이 재 운(李 在 雲)
1909년 5 월25일생
〃 신 현 진(申 鉉 眞)
1919년 3 월 7 일생
〃 이 재 경(李 在 景)
1927년12월15일생
〃 이 재 하(李 在 河)
1930년 3 월26일생

본 적 및 최후주소 강원도 양양군 양양면 남문리175번지

위 부재자들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부재자들이 1948년 9 월20일 당시 행방불명되었으므로 실종선고를 바란다는 청구가 있어 당원은 1978년 11월24일 부재자들의 생사신고를 할 것을 공고하였으나 그 기일인 1979년 6 월 4 일 그 신고가 없으므로 부재자들은 1948년 9 월20일부터 5 년이상 생사불명인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주 문

부재자 이재운, 신현진, 이재경, 이재하의 실종을 선고한다.

1979년 6 월 7 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심판관 장 석 화

---

78. 느. 735

청구인 최 시 영(崔 時 永)
주 소 속초시 노학동 625번지

31475

사건본인 (부재자) 최 선 진(崔 善 振)
1913년11월17일생
본적 및 최후주소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봉평리 92번지

위 부재자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부재자가 1950년10월 3 일 당시 행방불명되었으므로 실종선고를 바란다는 청구가 있어 당원은 1978년11월 24일 부재자의 생사신고를 할것을 공고하였으나 그 기일인 1979년 6 월 4 일까지 그 신고가 없으므로 부재자는 1950년10월 3 일부터 5 년이상 생사불명인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주 문

부재자 최선진의 실종을 선고한다.

1979년 6 월 7 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심판관 장 석 화

---

78. 느. 743~748

청구인 이 규 운(李 圭 雲)
주 소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2 리 4 반
사건본인 (부재자) 이 영 춘(李 永 春)
1922년 9 월25일생
〃 이 영 찬(李 永 燦)
1925년 1 월30일생
〃 김 상 녀(金 相 女)
1929년 5 월 3 일생
〃 이 영 학(李 永 學)
1930년10월22일생
〃 이 영 식(李 永 植)
1932년 8 월 5 일생
〃 이 영 준(李 永 俊)
1936년 4 월 6 일생
본적 및 최후주소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4 반

위 부재자들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부재자들이 1953년 7 월27일 당시 행방불명되었으므로 실종선고를 바란다는 청구가 있어 당원은 1978년 11월24일 부재자들의 생사신고를 할것을 공고하였으나 그 기일인 1979년 6 월 4 일까지 그 신고가 없으므로 부재자들은 1953년 7 월27일부터 5 년이상 생사불명인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주 문

사건본인 부재자 이영춘, 이영찬, 김상녀, 이영학, 이영식, 이영준의 실종을 선고한다.

1979년 6 월 7 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심판관 장 석 화

---

78. 느. 870 • 871

청구인 • 이 원 균(李 元 均)
주 소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인정리 449번지
부재자 이 병 옥(李 炳 玉)
1923년11월30일생
〃 이 병 대(李 炳 大)
1929년 9 월 9 일생
본적 및 최후주소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인정리 449번지

위 부재자들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부재자들이 1953년 7 월27일 당시 행방불명되었으므로 실종선고를 바란다는 청구가 있어 당원은 1978년 11월24일 부재자들의 생사신고를 할것을 공고하였으나 그 기일인 1979년 6 월 4 일까지 그 신고가 없으므로 부재자들은 1953년 7 월27일부터 5 년이상 생사불명인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주 문

부재자 이병옥, 이병대의 실종을 선고한다.

1979년 6 월 7 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심판관 장 석 화

관보 제8271호 문서 제60건
관보부 (교환) (75) 6161
(자동) (75) 6315

476
32
6510